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48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29.

발 의 자:서범수ㆍ권영세ㆍ김희곤

박덕흠 • 박수영 • 윤영석

윤한홍 • 이양수 • 전봉민

최춘식 · 최형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관련 법에 따라 국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노인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는 현행법에 6층 이상인 아파트,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

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어,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최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, 스프링클러는 물론이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 지기가 없어서 초기진압에 실패하고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음.

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)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, 스프링클러 설치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2.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급자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4.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 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	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
	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
	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에 소요
	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지원할 수 있다.
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	<u>따른 수급자</u>
	2.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른 수급자
	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
	른 지원대상자
	4.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
	<u>정하는 취약계층</u>
<u><신 설></u>	④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소
	방시설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
	하려는 사람에게 「재난 및 안
	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
	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
	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u>③</u> (생 략)

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